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나42300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나4230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3. 10 선고 2020가단258537 판결

###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성 담당변호사 송준호, 승국화

변론 종결 2022. 8. 12.

판결 선고 2022. 11. 4.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3. 10. 선고 2020가단258537 판결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18. 6.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7,839,5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839,5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2014. 4. 1. 소외 E은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함)와 여신거래약정을 하고, 6,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26.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014. 5. 12. 소외 E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카드'라 함)에 5,000,000원 카드론 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소외 E을 상대로, G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27642호 지급명령이 2015. 7. 15., F카드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357212호 이행권고결정이 2015. 4. 17. 각 확정되었다.

나. 2017. 6. 28. G은 원고에게, 2018. 7. 5. F카드는 원고에게 각 소외 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 사실을 소외 E에게 통지하였다.

다. 2020. 6. 9. 소외 E의 G 관련 채무내역은 원금 5,046,730원, 이자 7,635,866원 합계 12,682,596원(연체이율 연 26.9%)이고, F카드 관련 채무내역은 원금 14,477,953원, 이자 18,505,492원 합계 32,983,445원(연체이율 연 23.7%)이다.

라. 소외 E, 피고의 아버지인 J이 2018. 6. 10. 사망하였는바, J은 상속인으로 처 K, 자녀 L, 피고, M, N, 소외 E을 두었고,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다.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장남인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2019. 4. 26.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었다.

마.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소외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적극재산이 없었고 단지 위와 같이 채무만이 있었다. 그 이후 제1심판결 변론종결시까지 소외 E에게 별다른 재산상태의 변동이 없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6.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13821호로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로되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9. 23. 당시 가액은 115,223,050원, 2020. 6. 9. 당시 가액은 115,957,0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의 소는 제척기간 1년이 도과되어 제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인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행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된 것은 2019. 4. 26.인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0. 6. 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년 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기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이 소외 E의 유일한 적극재산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살피건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소외 E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 등이 소극재산으로 남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다. 피고의 악의 여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라는 점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라. 이 사건 소송행위가 금지되는지 여부**

피고는 소외 E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서울회생법원 2022개회1047635), 이 사건 소송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현재 소외 E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다.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E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중지명령이 내려졌으나, 다만 소송행위는 중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행위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살피건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후 2019. 5. 16. 채권최고액 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소외 E에게 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20. 6. 9. 기준 원고의 채권액은 45,666,041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15,957,0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소외 E의 상속지분 2/13 상당액은 17,839,546원(원 미만 버림)으로 이는 원고의 채권액 미만이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7,839,5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839,5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우인성

판사박성규

판사신한미

별지